

독일에서의 포장물법과 이원체제 (Duales System) — 생산자책임의 실천의 예 —

Fritz Flanderka(독일·변호사)

번역 朴秀赫(서울시립대 교수)

- I. 개 요
- II. 본 론
 - 1. 순환관리법과 폐기물법
 - 2. 포장물법
 - 3. 포장물법의 입법화
 - 4. 유럽공동체 포장물지침과 회원국으로의 전수
- III. 조 망

I. 개 요

오랫동안 자치단체, 지분구(주) 그리고 연방에서 폐기물정책이 논란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모두가 동시에 만족할 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었다. 시급히 요청되는 폐기물 매립지, 소각시설 또는 퇴비화시설들은 되풀이해서 실현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장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오물, 독극물 그리고 악취가 두려워서 모든 가능한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서 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폐기물매립지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폐기물정책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했다. 이러한 쓰레기 비상상태에 대한 해결이 1991년의 포장물법(Verpackungsverordnung)에 의

해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폐기물법의 일부로서 순환관(Kreislaufwirtschaft)과 생산자책임원칙(Produktverantwortung)이 도입되었다.

폐기물정책의 새로운 방향은 처음부터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 논쟁은 부분적으로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그러나 입법자(Gesetzgeber)는 제안된 길을 고수하여 첫번째로 포장물 규칙에 확정한 원칙을 1994년 9월 27일 제정 공포된 순환관리법과 폐기물법에서 종합적인 폐기물법의 기초로 하였다. 이로써 폐기물의 생산자나 소유자는 폐기물 축소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 획득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광범위한 의무목록에 구속되어졌다.

1989년에서 1991년까지 전체 포장재료의 소비는 942만톤에서 1,279만톤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소비증가 경향이 1991년 포장물법의 실행으로 시정될 수 있었다. 전체 포장물소비가 1993년에 1,180만톤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독일 이원체제(DSD)가 관여하는 가정과 영세업소의 포장재료 소비분야에서도 1989년 563만톤에서 754만톤으로 소비가 증가하던 것이 포장물법이 시행된 후 1993년에는 696만톤으로 감소하고, 마침내 1996년에는 632만톤으로 감소하여 성공적인 폐기물 감소율이 약 16%에 달했다.

1991년 이래 이원체제(DS)의 수거를 통하여 1,300만t³의 폐기물이 줄어들었다. 1996년 1년만 해도 약 540만톤의 사용된 판매용 포장물이 독일 이원체제(DSD) 하에서 위임한 기업체들에 의해 수거되었다. 이 중 532만톤이 분류되어 재활용되었다. 이원체제의 도입 이래 폐기물관리분야에 약 17,00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私法的인 반환방법과 재활용방법의 중설은 법적으로 폐기물법에서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공법적으로 규율되던 환경법의 영역에 私法이 들어온으로써 지금까지는 상하질서관계로 특정지워진 공법이 적용되던 형성의 범주는 타협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입법자나 규칙제정자들은 물론이고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들에게도 새로운 요구를 하게 되었다. 私法的·公法的 “투쟁상태”는 서로 다른

대책을 요구해서 공법적인 범주에서의 사고는 개별적인 경우에 알맞은 해결책을 얻기에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반대로 사법적인 형성시에는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법적인 그리고 이로 인한 공법적인 핵심적인 목적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법실무와 법학계는 포장물법과 이원체제 (Duales System)의 구조들이 이미 여러 번 사법과 공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시기에 새로운 환경법의 이러한 중요한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래의 설명은 포장물법의 중요한 내용과 그에 기초되는 이원체제 (Duales System), 그리고 계획중에 있는 입법과 유럽공동체 방침을 개관한 것이다.

II. 본 론

1. 순환관리법과 폐기물법

1996년 10월 7일 새로운 순환관리법과 폐기물법이 2년간의 잠정기간을 거쳐 발효되었으며, 기존의 폐기물법은 효력이 상실되었다. 이 법은 전체 폐기물법의 기본이 되는 새법전편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가정쓰레기분야는 1986년의 舊폐기물법에 따른 법적 지위로 알려져 있는 광범위한 국가의 조정행위와 집행행위에 의존하고 있다. 생산과 산업용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야기자책임원칙이 적용된다.

이를 통하여 순환관리의 새로운 법은 폐기물분야의 실질적인 민영화에 대한 규범적인 근거가 된다. 전례의 폐기물처리는 야기자에 의한 폐기물감소전략과 재활용전략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대체된다. 이 폐기물처리분야는 이로써 어쨌던 가정폐기물분야는 더 이상 공공 생

존배려의 일부로 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야기자 책임으로 도입된 첫번째 분야는 포장물분야이다. 1991년 제정된 포장물규칙은 아직도 舊폐기물법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새 순환관리법과 폐기물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척도가 되었고, 계속해서 가까운 장래에 공포될 순환관리법과 폐기물법의 기초로 될 규칙에 근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포장물법을 근거로 생산자 책임의 원칙적인 항목들과 문제들을 요약하고자 한다.

a) 포장물 규칙의 수권 근거

포장물법의 수권근거는 §14 Alfg를 대체한 §24 KrWyAbfG이다.

이에 대한 규칙제정자는 법령의 공포가 수권되며, 이 법령들에 의하여 생산물과 생산물의 사용 후에 발생한 폐기물들의 측면에서 생산자책임이 §22 Abs.2에 따라 법적 의무로 구체화된다. Abs.1에 의하여 생산자나 판매자의 반환의무와 입증의무가 근거되어지고 Abs.2에 의하여 그 밖의 생산자와 판매자의 보충적인 의무 내지는 다른 참가인들이 반송의무와 협조의무가 근거된다. 수거된 폐기물의 처리나 재활용의 의무는 GG5ff에 의한다.

b) 폐기물규칙의 폐기물관리상의 목적

법령(규칙) 제정자들의 폐기물관리상의 목적 의도는 폐기물규칙 제1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포장물은 환경친화적이고 재질의 재활용이 쉬운 재료로서 생산되어야 한다. 폐기물 감소는 모든 폐기물관리 조치들의 상위에 있다.

포장폐기물 감소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조처로서 실행되어야 한다.

- 직접적으로 보호될 내용물의 무게와 부피에 따라 그리고 상품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척도에 따라 포장을 제한함으로써
- 여러 번 사용, 특히 재주입을 통하여
- 순환관리에 의한 반송을 통하여(Recycling)

c) 적용범위

포장물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영업을 목적으로 혹은 기업이나 공공서비스의 범주 내에서 포장재료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자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정부 초안의 근거는, 이 규칙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모든 경제거래에 참여하는 자는 이 규정의 적용범위에 속해야 하고 단지 사적인 적용범위는 제외된다.”라고 하여 위의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렇지만 이 규칙의 객관적인 적용범위는 사람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무해하게 처리될 수 없는 포장물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위험물규칙에 규정된 건강에 유해하거나 화학물질법에 규정된 환경에 유해한 짜꺼기가 포함됐거나 부착되어 있는 모든 포장물이다.

d) 개념 결정

법령(규칙) 제정자는 제3조에 폐기물규칙의 이해에 아주 중요한 일련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aa) 생산자

폐기물규칙은 두 개의 생산자 개념을 포장물 생산자와 생产业 생산자를 구분하였다. “포장물 생산자”는 직접 포장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를 말하고, “생产业 生产者”는 인조포장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입자의 생산자를 생산물 생산자로 한다.

bb) 판매자

포장물 생산자와 납품하는 모든 곳에서부터 최종소비자에게로 납품을 하는 곳까지가 판매자개념에 속한다. 나아가서는 발송거래도 이 규칙의 의미에서의 판매자이다.

cc) 포장물

포장물법은 서로 다른 법결과에 적용되는 세 가지 형태의 포장물을 구분하고 있다. 구분에 결정적인 것은 규칙제정자가 정한 기능 결정이다. 이에 따라 수송포장물은 포장재료가 물품이 생산자로부터 판매자로의 이전과정에 손상을 방지하거나 수공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

는 포장물이다.

판매포장물은 이에 반하여 운반이나 최종소비자를 통한 상품의 소비에 이르기까지에 이용된다. 제3조 1항 2번은 분명히 포장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매포장물의 개념을 일회용 그릇류와 일회용 수저에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포장물이 있다. 이것은 그의 기능에 따라 부가적인 포장물로서 셀프서비스나 도난방지 또는 선전용에 이용된다.

수송포장물, 재포장물 혹은 판매포장물로서 포장물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다른 의무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그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 이것은 동일한 포장물의 종류가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느냐에 따라 수송포장물이나 판매포장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

dd) 최종소비자

최종소비자는 상품을 그 형태 그대로 재판매하지 않는 구매자이다. 연방정부의 규칙제정근거에 의하면 그것이 일반 소비자이거나 사업체를 불문하고 상품을 그 형태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판매를 하지 않으면 최종소비자이라고 한다. 이것은 만약 구매자가 구매한 부속품을 생산물에 결합시켜서 재판매한다면 판매자는 최종소비자와 거래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서 모든 자동차산업체의 공급관계가 이에 속하며, 부품을 구입한 자동차생산업체가 이 규칙의 의미에서는 최종소비자이다.

2. 수거의무, 처리의무 그리고 담보금부과의무

a) 생산자와 판매자의 의무

aa) 수송포장물

생산자와 판매자는 제4조에 의하여 수송포장물을 사용한 후 수거를 하고 재활용하거나 공공의 폐기물처리과정에 유입시키지 않고 재질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생산자나 판매자들은 이러한 의무를 스스로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수송포장물의 수거와 처리를 생산자와 판매자들의 위임을 받아 의무를 이행해 주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bb) 재포장물

상품을 재포장하는 판매자는 제5조에 의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을 인도할 때 재포장을 제거하거나 최종소비자가 판매장 또는 판매장 주위의 장소에서 포장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무료로 포장지를 반환받을 의무가 있다. 포장물법의 시행 이후 재포장의 발생이 80% 이상 줄어들었다.

cc) 판매포장물

제6조 1항에 의하면 판매자는 최종소비자가 사용한 판매포장물은 판매장이나 판매장 근처에서 무료로 반입받을 의무가 있다. 이것은 택송판매에도 적용된다. 판매자에게 수거된 포장물은 판매자나 생산자들에 의해서 재활용되거나, 제6조 2항에 따라 공공 폐기물처리의 과정에 유입시키지 않고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만 생산자와 판매자는 제6조 3항에 따라 한 체제(소위 말하는 이원체제, Duales System)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판매포장물의 수거와 처리의무는 3단계로서 1993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dd) 음료수포장물

음료수포장물과 세제포장을 그리고 분사용색체의 판매자는 제7조와 8조에 의하여 또 다른 의무가 있다. 이들 판매자는 상기한 분야의 재사용 포장물이 아닌 모든 포장물에 대해서 구매자들에게 일정한 담보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금부과의무는, 제6조 3항에 따른 이원체제(Duales System)와 같은 체제가 설치되어 있으면, 면제된다. 담보의무가 면제되는 다른 조건은 연방지역이나 어떤 지분국(주)에서 소위

말하는 재사용율이 72% 이하가 될 때이다.

b) 제3자 위임, 질서위반

생산자나 판매자는 부여된 의무를 스스로 이행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 그들은 제11조에 의하여 제3자, 예로서 상용하는 수준인 처리업체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의 내용상으로는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선전속의 성질이 아닌 의무는 위임을 통하여 충족할 수 있는 일반원칙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생산자와 판매자가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의무로서는 그 성질상 제4조에서 6조의 수거와 처리의무가 있다. 개별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 제4조의 범위 내에서는 수거는 물론이고 처리의무도 무제한으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제5조의 재포장물 수거의무는 그 성질상 위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의무는 장소적으로 판매처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리의무는 다시금 제3자에게 위임될 수 있다. 재포장물과 비슷한 것으로는 또한 제6조 1항의 판매포장물의 기본적인 수거의무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의무 또한 개별적 판매자의 판매처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처리의무는 위임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판매자와 생산자의 수거의무와 처리의무 전체는 제6조 2항에 의하여 위임될 수 있다.

의무의 위임시 구매자에게 위임으로 인하여 다른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

포장물법위반을 질서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단지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주어진 의무의 관철과 실천의 측면에 있다.

C) 제6조 3항에 따른 이원체제(Duales System)의 구조, 재원, 업무범위

개별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 다른 사적으로 조직된 판매포장물 분야에서의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하여 「Duales

System Deutschland Gesellschaft für Abfallvermeidung und Sekundärrohstoffgewinnung mbH」를 퀼른에 설립하였다.

다음은 현재의 Duales System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aa) 포장물법의 구조적 이점

제6조 3항 1문은 관청의 허가를 받기위한 Duales System의 조건을 열거하였다. 이 때 “체제”라는 개념에서 벌써 하나의 광범위한 수거논리, 분리논리, 그리고 처리논리계산만이 규칙의 요청에 상응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① 지역적 충족 : 제6조 3항 1문은 먼저 그러한 체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제3조 4항에 의하여 각 지분국(주)이며, 지역 전체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징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체제는 적어도 한 지분국(주) 전체를 포함해야 하며 단지 몇몇 도시나 일부지역에만 해당되고 타 지역을 고려치 않으면 안된다.

② 최종소비자 가까이 : 제6조 3항의 다른 조건에 의하면 허용된 Duales System은 사용된 판매포장물을 최종소비자 가까이에서 수거해야 한다. 최종소비자의 개념은 넓게 해석해야 하고, 제3조 5항에 의하여 상품의 형태를 변경하지 않고 재판매하지 않는 모든 구매자를 포함한다. 바로 이 조항의 범주 내에서 연방상원은 이전에 규정했던 “가정용”이라는 표현을 “최종소비자”라는 개념으로 대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판매포장물의 규칙적인 수거는 또한 다른 최종소비자, 즉 군부대, 병원, 행정관청, 공장 등도 포함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각 지분국들은 Duales System Deutschland AG에 대한 면제결정서에 이 정의를 연결하고 이 체제의 활동을 산업체나 영업소 분야에까지 확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반하여 연방카르텔청에서는 처리업무에 관한 문제에서 경쟁제한이 있다고 보고 DSD AG를 상대로 §1 GWB와 §37a Afs.1 GWB에 따른 거절절차를 제소하였다.

연방카르텔청과 제소자 그리고 DSD AG 사이의 협상에서 제기된 절차의 조정을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DS를 통한 규칙적인 판매포장물의 수거를 합의하였다.

- 음식점(즉석음식점과 호텔을 포함)
- 구내식당
- 병원
- 행정청
- 교육시설
- 군부대
- 자유직업자
- 인쇄를 하지 않는 수공업체와 여타의 보통가정용 종이, 박스 등과 경포장물을 위한, 재질의 종류에 따라 최대 1100L 통이 넘지 않는 수거통으로, 통상 가정의 쓰레기 수거에 의해 처리되는 종이로 가공하는 업체.

이 소위 말하는 영업소편은 카르텔법적으로는 만족스러울지라도 규칙의 명백한 문구와 실제에서는 많은 실천의 어려움이 있다.

③ 규칙적인 수거 : 지역적인 요소와 함께 Duales System은 시간적인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연방정부에 의해서 요청된 판매포장물의 “규칙적인 수거”는 연방상원의 요청에 따라 강화되고, 덧붙여져서 “충분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써 자치단체의 쓰레기 수거와 같이 사용한 판매포장물이 규칙적인 리듬으로 수집되어져야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④ 제6조 3항의 부록 : 이 체제는 또한 포장물법의 부록에서 지적한 요청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부록은 두 가지 다른 시점을 규정하고 있다(1993년 1월 1일과 1995년 7월 1일). 각 시점에는 특정한 판매포장물의 양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상으로는 재료들에 따라 정해놓고 특정한 백분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상으로는 재료들에 따라 특정한 양이 재질에 따라 분류되어 처리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 부록은 양적인 요구조건이 제시되어져 있다.

〈양적인 요청〉

재료	1993년 1월 1일	1995년 7월 1일
유리	60 %	80 %
백철	40 %	80 %
알루미늄	30 %	80 %
박스류	30 %	80 %
종이	30 %	80 %
플라스틱	30 %	80 %
결합물	20 %	80 %

〈수집한 재료 분류의 양적 요구〉

재료	1993년 1월 1일	1995년 7월 1일
유리	70 %	90 %
백철	65 %	90 %
알루미늄	60 %	90 %
박스류	60 %	80 %
종이	60 %	80 %
플라스틱	30 %	80 %
결합물	30 %	80 %

〈종합적으로 처리되는 최소한의 양〉

재료	1993년 1월 1일	1995년 7월 1일
유리	42 %	72 %
백철	26 %	72 %
알루미늄	18 %	72 %
박스류	18 %	64 %
종이	18 %	64 %
플라스틱	9 %	64 %
결합물	6 %	64 %

부록에 요구된 양은 그 밖에도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정해진 시기에 해당 지방관청에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증거제시는 실제로는 소위 말하는 “양적 흐름의 증명”을 통하여 실시되며, 그의 윤관조건은 지분국 행정장관의 전문분과에서 결정되었다. 이렇게 제시된 수치는 경영 검사회사에 의하여 정확성과 적절성이 검사된다.

⑤ 처리의무가 있는 단체와의 결의 : 제6조 3항 2~5문까지에 의하여 이미 폐기물법적 책임의 범주 내에서 폐기물처리 의무가 있는 단체에서 실시한 유사한 체제들과의 필연적인 조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실제에서는 이의 실천이 “결의합의”의 형태로 DSD AG와 개별적 단체 사이에서는 이루어진다. 4문에 의하여 이미 설치된 수집체제나 처리체제와 다른 폐기물처리의무가 있는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물론 DS의 임무와의 구체적인 연관이 있어야 한다. 예로서 협력에 대한 의무는 공공사업의 범주 내에서 이 규정에 일치되어야 한다.

⑥ 행정관청의 확인 : 한 이원체제(DS)는 만약 그러한 체제가 지역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폐기물 관리에 관할권이 있는 최상급 지분국 행정관청 내지는 이를 위한 정해진 관청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고지가 되는 일반처분을 통하여 확정되어지면 포장물 규칙의 개별적 의무가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소위 말하는 “면제선언”은 모든 지분국들에게서 1992년과 93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제6조 3항 6문에 의하여 규정된 내용과 함께 모든 지분국의 이 면제선언은 계속적인 DS의 형성의 이점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수한 종속규정들이 있다. 실질적인 형성에 대한 특수한 의미 때문에, 이 종속규정들이 모든 지분국들에게는 행정소송절차의 기준이 되었다.

bb) Duales System에의 참여와 형성

① Duales System Deutschland AG의 형성 : 공공의 폐기물처리와 함께 사용된 판매포장을 위한 두 번째의 폐기물처리체제는 상인들과, 산업체, 포장물생산자 그리고 재료납품업자들이 1990년 9월

28일 「Der grüne Punkt Duales System Deuschland Gesellschaft für Abfallvermeidung und Sekundärrohstoffgewinnung mbH」란 회사를 Bonn에서 설립하였다. 그 회사는 그 사이에 Köln으로 이전되었다, 여기서 사용되는 줄임말인 “Duales System Deuschland GmbH”는 또한 “DS”나 “DSD”로 사용된다.

이 회사는 상인들, 포장물을 사용하는 산업체와 포장물 생산업체 내지는 원자재 납품업체 등의 기업체들이 5,000DM의 지분을 납부한 자본금 삼백만DM의 회사이다. 이 회사의 회원은 전혀 경제적인 특권을 얻지 않는다. 이익금의 분배는 회사계약을 통하여 금지되어 있다(무이익회사). 항상 제기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 기업들은 DSD AG에 속하지 않는다. 이로써 Duales System은 “Der Grüne Punkt - Duales System Deutschland AG”로 불린다. 회사운영진과 함께 회사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책의 지침선을 결정하는 감독위원회와 또 다른 기관으로서, 경영진과 감독위원회에 회사와 회사정책문제를 조언하는 후견인회가 있다.

DSD의 매상은 1996년 41억DM에 달했다. 다음 해의 매상도 거의 비슷한 40억DM대로 추정된다. 1993년 경제난으로 상인, 상품생산업체 원자재 생산업체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제공한 대출금 10억 여DM은 기업경고화계획의 범주 내에서 부분적으로는 자기자본의 특성을 가진 익명회사 참여로 변했다. 이 회사는 약 340명의 직원이 있다. 이 회사는 경제정책적인 요청에 적응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유한책임회사(GmbH)를 주식회사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Duales System은 이제 “Der Grüne Punkt - Duales SystemDeuschland AG”로 불린다.

② 체제 참여 (“Der Gnuine Dunkt 녹색점”) : 한 체제가 포장물법의 요건에 충족이 되면, 판매포장물의 생산자와 판매자들이 반환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어떤 형태로 이 체제에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규칙의 문구에 의하면 그러한 참여에 대한 조건으로서 특정한 조직 형태나 법적 형태가 없다. 그러나 또한 생산활당의 형태

로의 참여가 있다. 참여는 단지 그러한 Duales System의 재정을 보장해주면 된다. 참여의 형태와 구분되어야 할 것은 체제참여로써 어느 정도 반환의무의 면제가 연루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그러한 Duales System의 구체적인 형태가 결정적인 해답을 준다. 회사참가 - 유한회사의 사원 - 가 그러한 체제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이면, 판매자와 생산자의 의무가 완전히 면제된다. 이에 반하여 Duales System이 생산 내지는 포장물에 연관된 항목만 재정지원을 하도록 형성되어 있으면, 당해 생산자나 판매자의 의무면제는 단지 어떻게 그들의 상품으로서 이 체제의 재정지원에 참여하느냐 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반환의무의 면제를 원하는지 않는지 하는 것은 각 생산자 내지는 판매자의 판단범위이다.

DSD AG에 의하여 운영되는 체제는 반환의무나 처리의무가 포장에 녹색점이 찍혀 있거나 다른 형태로 표시계약에 의하여 인정된 경우에만 면제된다. 다른 모든 상거래에 유통되는 판매포장은 이에 반하여 1993년 1월 1일 이래 시행된 제 6조 1항과 2항의 반환의무와 처리의무가 적용된다. 포장물법의 개별적인 의무가 면제되었는지는 상거래에 유통시킨 - 그리고 녹색점이 찍힌 - 판매포장물이 실지로 수집되고, 분류되어 처리되었는지에 따라서 판단된다. 이 문제는 제6조 3항 6문에 의한 행정관청의 체제의 확인을 위한 역할을 한다. 이에 관한 것은 제6조 3항의 부록 2번에서 관청의 체제에 대한 확인에 통과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수집한 포장물의 퍼센트를 개별적 포장물 재질에 따라 분류해 놓고 있다.

이원체제(DS)는 “녹색점” 표시의 사용료로 내는 특허료로서 재정지원이 된다. “녹색점”은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DSD AG의 특허표시이다. 사용권의 수여는 표시사용계약의 체결로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윤과계약으로 형성되고 포장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산신문에 게재되어야 유효하다. 표시사용계약의 체결로서 표시사용자는 그의 판매포장물에 녹색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 특허료에 대한 척도는 우선 재질에 관계없이 포장물의 양이다. 1993년 10월 1

일 이후부터는 특허료의 계산에 사용된 재질과 양이 결합되었다.

이 때 특허료는 각 포장재료에 따라 실지로 처리에 드는 비용에 따라 산정되었다. 1994년 10월 1일 이래 특허료는 포장을 개당 무게와 갯수의 비용을 첨가해서 산정되었다. 이 때 무게비용은 재료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이 또한 산정되었다. 개당 비율은 이에 반하여 재료에 무관하게 분류에 드는 비용이 산정된다.

유럽경제권에서 유입된 수입제품은 독일제품과 동일하게 Duales System을 적용한다. “녹색점” 표시사용의 신청자는 이에 따라 EU와 EWR에 있는 외국인 상품생산자뿐만이 아니라 수입업자도 될 수 있다.

수출은 녹색점을 표시하건 말건 Duales System의 재정지원에 참여되지 않는다. 특허료는 단지 독일시장에 유통되는 생산물에만 부가된다. “녹색점”은 환경보호의 표시가 아니다. 이것은 Dual System에 영입된 판매포장물의 표시이며 포장물법에 의한 반환의무와 처리의무의 면제를 위하여 생산자와 판매자가 사용하는 것이다.

③ 수집과 처리의 조직

〈수 집〉 DSDAG의 위임으로 500개 이상의 지역적인 - 사적 혹은 자치단체의 -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용된 판매포장물의 수집과 개별적 재질들로의 분류에 참여하고 있다. 이원체제(DS)는 포장물법의 규정에 있는 수집과 분류체제에 의하여 보완되고 실행되는 폐기물처리모델이, 처리의무가 있는 기업들과 함께 결성되었다. 그래서 연방 전체에 단일한 수거체제가 없고 수많은 자치단체의 회망과 시민들의 풍습에 의해 결정된 모델들이 있다. 그러한 한도 내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은 수거체제와 반납체제 내지는 몇몇 혼합형태와 특수형태들이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우선 그 업무 대가로 톤당 비용을 받았다. 그러나가 요즈음은 업무 대가를 주민에 관련된 보수에 의해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처 리〉 수집되고 분류된 재질들은 소위 말하는 “인수보장업체와 처리보장업체”인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제공된다. 이는 개별적 포장재료의 생산업체이거나, 특별히 DS와 다른 원천에서 생긴 2차원자

구 분	재 료	DM/Kg
무게 비용	유 리	0.15
	종이와 박스류	0.40
	백 철	0.56
	알루미늄, 여타의 쇠	1.50
	플라스틱	2.95
	종이와 결합된 복합물(음료수용)	1.69
개 당 비	여타의 결합	2.10
	자 연 재	0.20
	50ml에서 200ml	0.1 ~ 0.6Pf
양	200ml에서 3L	0.7 ~ 0.9Pf
	3L 이상	1.2Pf
면적	150cm ² 에서 300cm ² 과 3g	0.1 ~ 0.4Pf
	300cm ² 에서 1600cm ²	0.6Pf
	1600cm ² 이상	0.9Pf

재의 처리·판매를 위하여 설립된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DS의 범위 내에서 수거된 포장물재료의 인수와 재료에 따른 처리를 보장한다.

DS를 거쳐서 수집되고 분류된 개별적 포장물재료들에는 여러가지 다른 역사적으로 병립된 재활용전통이 있다. “고전적인” 유리와 종이와 함께 DS의 실시에 이미 잘 발달된 재활용구조가 있었으며, 충분한 처리능력이 우선 많은 비용을 투자한 후 달성된 재질들도 있다. 언급하자면 무엇보다 인조합성물류 포장물이다.

이들의 처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보증자로서 「DKR, Deutsche Gesellschaft für Kunststoffrecycling mbH」가 성립되었다. 처음에는 이원체계(DS) 처리의 동반자는 그들에게 수집된 포장물 재질들을 분류후 변동이 심한, 내지는 부정적인 시장가격시 처리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포장업체에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유럽공동체의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유럽공동체법 Art, 85Abs, 1 lita 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처리업자는 독립적인 경제적인 처리가 어려우며, 이차재원자재의 시장 성립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DSD AG는 그의 폐기물처리 동반자에게 계약보증의 범위 안에 포장물재질들을 좋은 시장가격으로, 자체의 기획으로 재료를 구매했다. 여기서 도출된 것이 인조합성물질(플라스틱 등)이다.

4. 포장물법의 입법화

a) 입법화 노력의 동기와 입장

DS활동 초기의 어려움은 포장물법 제6조3항에 의한 체제가 많은 경제적인 영향과 종속물들을 방출했던 사실로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다양하다 :

- 자주 내세워지는 - 환경정책의 이해와 함께 규칙의 실천에 제약된 재정적인 경비가 큰 이유이다. 그래서 개별적 기업들이 지분국들을 행정집행의 결핍 때문에 포장물법에 의한 의무들이 면제되고, 단결 협조하는 기업의 비용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음으로써,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모든 거래체제의 당사자들에게는 인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규칙의 입법화초안은 현존 규정들을 실체적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기획되어 근본적으로 환영할 만한 것이었다.

5. 유럽연합의 포장물지침과 회원국들에의 이식

유럽국가 중의 한 국가가 포장물의 감소와 처리에 관한 규율을 제정한 후 유럽연합은 조화를 시도하였고, 유럽연합은 포장물과 포장물쓰레기에 관하여 1994년 12월 20일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의 지침 94/62/EG로 반포하였다.

독일 포장물법과 순환관리법을 유추한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목적(Art. 2 HCo. 2)을 촉구한다.

“우선적으로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회피하고; 그 다음번의 주요원칙은 재질의 재활용과 포장폐기물을 다른 형태로 재활용해서 쓰레기로서의 완전한 폐기처분의 연장이 이루어지도록 포장물을 재활용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포장물을 절감하기 위하여 17개월 이내에 사용된 포장물의 수집체제와 반환체제, 그리고 처리체제의 설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침의 중요한 내용이다. 체제의 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정하지 않았다.

이 지침은 우선권을 정하고, 백분율을 명문화하고 자료은행의 설치와 공공에의 계몽을 의무화했다. 나아가서는 돌아오는 2년 동안 포장물의 표시에 대한 제안을 하도록 연구하게 했다. 이 지침은 명문으로 지적한 목적의 실천을 위한 시장경제적인 기구의 설립을 환영하였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벨기에에서는 1993년과 1994년에 또한 사용된 포장물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독일의 이원체제, DSD와 같은 임무를 띤 체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체제들의 형성은 각 국가들의 주어진 조건과 법률적 규정에 따라 서로 다르다. 4가지 공통적인 것은 ; 재정지원과 참여표시로서 “녹색점” 표시를 사용하는 것이다.

독일 이원체제 (DSD AG)는 이 체제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로서 프랑스의 Eco-Emballages, 오스트리아 폐품재활용 ARA AG 그리고 벨기에의 Post Plus는 “녹색점”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이제 PRO EUROPE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체제를 도입하였다. 예로서 스페인의 Eco-Emballages España, 룩셈부르크의 VALORLUX, 그리고 포르투칼의 Sociedade Ponte Verde가 있다. 또한 모두가 재정지원과 참여 표시로 “녹색점” 표시를 사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DSD AG는 유럽의 조직본부로서 “Packaging Recovery Organisation Europe S.P. R. L” 약어 PRO EUROPE를 브뤼셀

에 설립하였다. 이 조직은 유럽연합 내부의 여러가지 다른 체제들 사이의 필수적인 협조를 위한 조직적인 윤곽을 만들었다. PRO EUROPE의 목적은 각국가의 유럽체제를 위한 특허표시 “녹색점”의 사용권을 단일한 원칙하에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의 연합관청과의 동의로 PRO EUROPE는 또한 “녹색점” 수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발전시키고, 각 국가 내의 체제를 통한 그들의 유지를 보장하려고 한다. 1996년 12월에는 Eco-Emballages S.A와 ARA AG가 PRO EUROPE의 사원으로 등참하였으며, 다른 조직들도 자국 관청의 허가가 나는 대로 등참하게 될 것이다.

III. 결 어

포장물법의 입법화는 규칙의 실천시에 발생하고, 발생된 모든 문제들은 제거할 수가 없어서,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미해결의 문제이며, 앞으로도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이 포장물법을 가진 유일한 국가가 아니라 앞으로는 유럽과 유럽 외의 다른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규율을 반포할 것이라는 사실은, 증가하는 국제적인 확장의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아직 주목될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다.